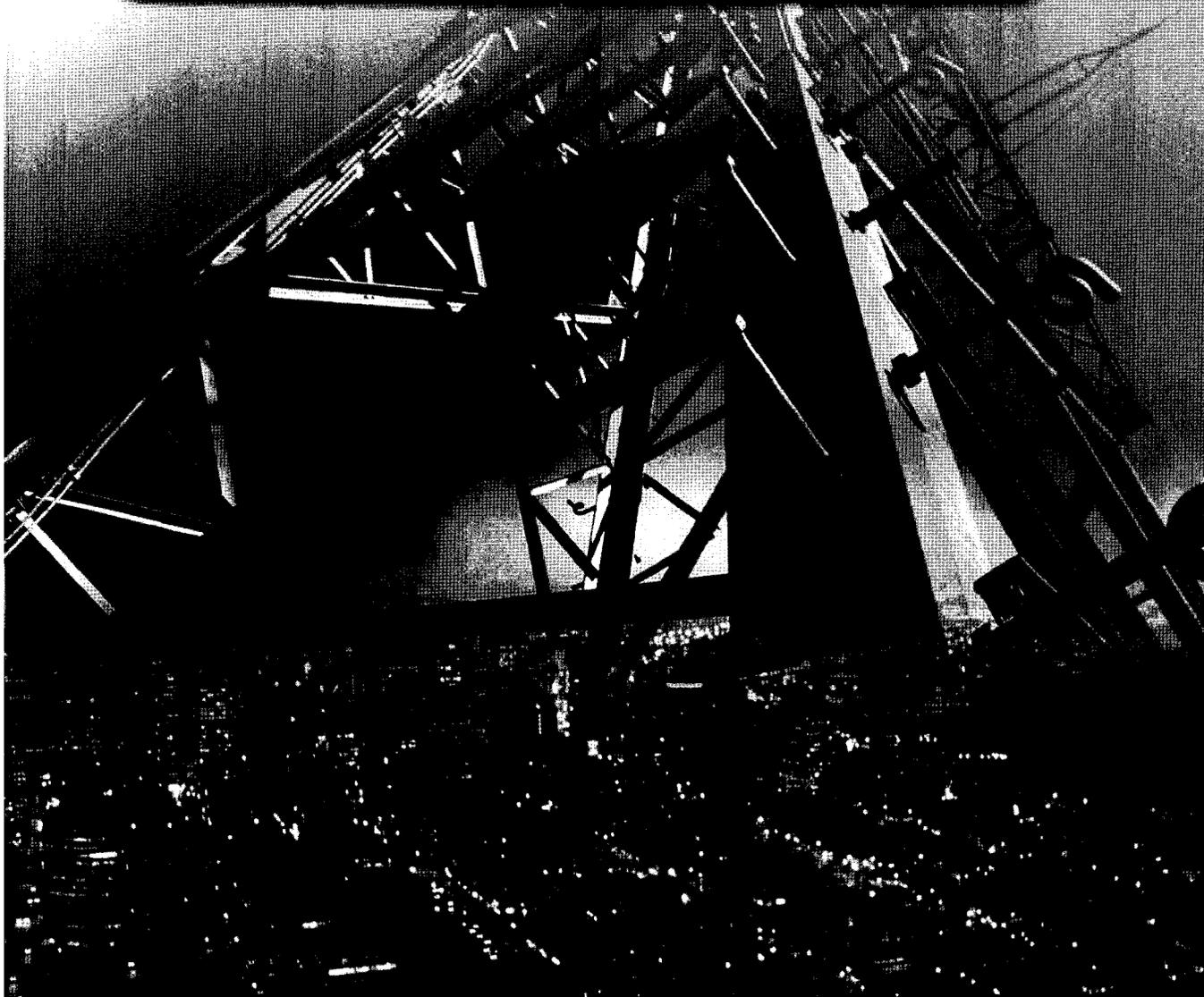


전기·도시가스요금 조정

전기요금 3.5% 도시가스요금 4.9% 인상

지식경제부는 8.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.5%인상하고, 9.1일부터 가스요금을 평균 4.9%인상하는 연동제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. 관련내용을 게재한다.

가스산업과 · 전력시장과



- ▶ 전 기 요 금 : 평균 3.5% 인상 (8.1일 시행)
- ▶ 도시가스요금 : 평균 4.9% 인상 및 연동제 복귀 (9.1일 시행)
- ▶ 서민요금동결 :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요금 동결

□ 지식경제부는 8.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.5%인상하고, 9.1일부터 가스요금을 평균 4.9%인상하고 연동제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(전기) 원가보상율이 낮은 용도(교육용·산업용·가로등)를 위주로 조정(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)하되,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주택용은 최소(2.0%)로 조정(농사용은 동결)하였음.

〈전기요금 용도별 조정 내역〉

비고	평균	주택	일반	농사	교육	산업	가로등	심야
조정률 (%)	3.5	2.0	동결	동결	5.9	5.8	5.9	8.0

- 아울러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겨울철에 적용되는 계절별·시간대별 요금제를 조정하였으며,
-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용도별(주택용·일반용)요금 이외에 전기차 전용요금을 설계하여 사용자가 용도별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.
- (가스) 원가보다 낮은 가스요금(공급원가 대비 89%)으로 인해 누적된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평균 4.9% 인상하고, '08년 3월부터 유보된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9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함.

〈도시가스요금 용도별 조정내역〉

구분	평균	주택용	업무난방용	일반용	산업용	열병합1	열병합2	열전용설비용
조정률(%)	4.9	5.9	5.1	4.4	3.9	5.7	4.0	3.4

□ (서민대책) 금번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차상위계층 요금은 동결

- (전기)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할인폭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신규로 할인하여 요금조정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조치함.(101만 가구에 대해 요금 동결)

*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할인율(%): (주택) 20→21.6, (심야전력) 25.9→31.4

*차상위계층 할인율(%): (주택) 신규할인 2.0, (심야전력) 24.1 → 29.7

○ (가스)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요금할인폭을 확대하고, 차상위계층 신규 할인을 도입하여 요금조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함.

* 사회적배려대상자 : 중증장애인(1~3급), 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상이자(1~3급), 독립유공자

*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할인율 확대 : 11% → 16%

* 차상위계층 신규 할인율 : 5.6%

□ (조정효과) 금번 요금인상으로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는 월 590원, 가스는 월 2,800원 정도 부담이 증가(4인가구 월사용량 약 66m³ 기준)할 것으로 추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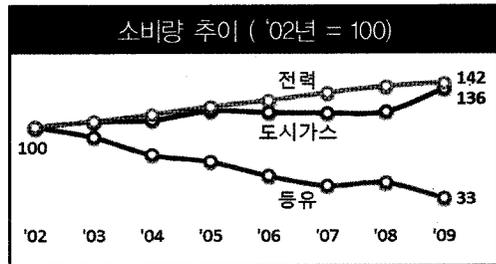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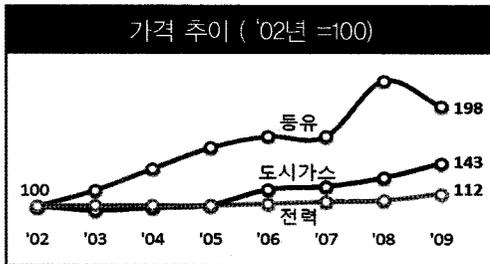
○ (전기) 연간 전기소비 42억kWh 감소(연간 전기소비의 약 1%)와 최대전력 58만kW 감축이 기대됨('09 최대전력 6,680만kW의 약 1%)

○ (가스) 가스소비량이 연간 54만톤 감소하여 LNG 수입 3.2억\$ 절감이 기대됨.

1. 요금인상 필요성

① (전기요금)

현재 요금수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(원가의 91.5%, 09년 기준) 전기 과소비가 발생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, 송배전설비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음.



○ 전기요금 조정 원칙상 10% 이상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나,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인상률(3.5%)을 결정하였음.

② (도시가스요금)

'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요금조정이 지연되면서' 10년 6월말 기준 미수금이 총 4.3조원에 달하고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344%에 달하는 등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.

○ 미수금 회수 등을 위해 총 13.6%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나, 물가 부담을 고려하여 4.9%만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일부는(1.4%) 자체 흡수기로 결정하였음.

2. 금번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특징

① 서민경제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

-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주택용 인상률을 최소화(2.0%) 하고, 농사용을 동결하였으며,
-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할인폭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신규로 할인하여 금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조치하였음.

②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 해소

- 원가보상율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산업용·교육용·가로등을 중심으로 인상함으로써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음.

(단위 : %)

비 고		평균	주택	일반	농사	교육	산업	가로등	심야
조 정 률		3.5	2.0	동결	동결	5.9	5.8	5.9	8.0
원 가 회수율	조정후('10)	93.7	93.7	99.4	36.5	90.1	96.5	88.0	73.9
	조정전('09)	91.5	92.2	100.7	37.2	84.4	90.9	80.4	66.1

* 심야전력은 수요관리 대책 발표('09.6월)시 '14년까지 매년 8%인상기로 함

* 조정후 '10년도 원가회수율(93.7%)은 추정치임

③ 계절별·시간대별(季時別) 요금제 개선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

- 최근 동절기에 하절기를 초과한 피크가 발생하는 등 변화된 전력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겨울철 시간대별 구분을 일부 조정하였고,
- 다른 계절에 비해 원가회수율이 낮은 겨울철 요금 위주로 조정

<계절별 조정률(%)>

구분	계절평균	여름	봄·가을	겨울
평균	-	2.4	1.4	7.6
산업용	5.8	3.9	4.2	9.2
일반용	동결	동결	△3.8	4.7
교육용	5.9	3.9	2.3	11.0

④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제 신설

-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일반 소비자, 향후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이 한전과 거래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으로서,
- 정부하 시간대 충전을 유도하여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고자 시간대별로 요금수준을 달리 적용(최대 4배)하였음.

- 자가 충전 시, 기존의 용도별 요금제(일반용·주택용 전력)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충전전력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.

3. 금번 도시가스요금 인상의 주요 특징

① 서민 경제안정 우선 고려

- 요금인상으로 인해 사회적 배려대상자*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함(현 11% → 16%)
- 또한, 차상위계층에 대해 신규로 요금할인을 도입하여(5.6%) 금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없게끔 조치함

②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 완화

- 원가회수율이 낮은 업무난방용, 열병합용 등의 조정률을 높게 설정하여 타 용도와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줄이고, 용도별 소비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음

〈 도시가스요금 용도별 조정내역 〉

구분		평균	주택용	업무난방용	일반용	산업용	열병합1	열병합2	열전용설비용
조정률(%)		4.9	5.9	5.1	4.4	3.9	5.7	4.0	3.4
원가회수율(%)	未조정시	88.9	87.1	90.4	90.9	90.6	89.3	90.8	91.9
	조정시	93.3	92.3	95.0	94.9	94.1	94.3	94.4	95.0

③ 원료비 연동제 복귀

-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'08년 3월부터 도시가스용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하였으나, 9월부터 연동제에 복귀하기로 하였음.
 - 이에 따라 향후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가격을 반영하여 2개월에 한 번씩(홀수달) 자동적으로 조정됨.

4. 전기가스요금 조정 기대효과

① 전기요금 조정효과

- (요금부담, 물가) 월 부담액은 주택용 590원, 산업체 약 2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소비

자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각각 연 0.038%p, 0.085%p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(에너지, 외화절감 등) 연간 전기소비 42억kWh의 전력소비 감소(가격탄력성 기준)와 4.2억\$의 LNG 수입비용 절감이 기대됨.

2 도시가스요금 조정효과

- (요금부담, 물가) 월 부담액은 주택용 약 2,800원, 산업체 약 1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,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각각 0.09%p, 0.06%p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(에너지, 외화절감 등) 가스소비량이 연간 54만톤 감소하여 LNG 수입 3.2억\$ 절감이 기대됨.

참고 사회취약계층 전기·가스요금 할인 확대

□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실적 및 확대계획

(단위 : 만가구, 억원, '09.12월 기준)

구분	시행	할인대상	가구수 (만가구)	09 할인액 실적(억원)	할인폭 확대(%)	추가 할인액(억원)
기초생활수급자	'05.12	주택용	48	258	20.0 → 21.6	23
	'08. 1	심야	1	16	25.9 → 31.4	5
사회복지시설	'07. 1	주택용	5	145	20.0 → 21.6	12
	'08. 1	심야	1	55	25.9 → 31.4	18
차상위계층	'10. 8	주택용	46	-	신규할인 2.0	33
	'08. 7	심야	0.1	3	24.1 → 29.7	0.7
합계			101	477		92

* 장애인(1~3급), 유공상이자(1~3급), 독립유공자, 3자녀 이상 가구, 대가족요금제도(누진 1단계 하향적용) 등 156만 가구에 대해 이미 할인(20.0%) 시행중('09 할인액 : 1,573억원)

□ 저소득층 가스요금 할인 실적 및 확대계획

(단위 : 만가구, 억원, '09.12기준)

구분	시행	할인대상	가구수 (만가구)	할인액 실적(억원)	할인폭 확대	추가 할인액(억원)
사회적 배려대상자	'09.1	주택용	77.8	181	11% → 16%	262
차상위 계층	'10.9	주택용	29.7	-	신규할인 5.6%	100
합계			107.5	181		362

* 사회적 배려대상자 : 중증장애인(1~3급), 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상이자(1~3급), 독립유공자

참고2 차상위 계층 전기·가스요금 신규할인

□ 추진배경

- 전기·가스요금 조정(주택용 전기2.0%, 가스5.9%)으로 인해 서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차상위 계층에 대해 신규로 요금할인(전기2.0%, 가스5.9%) 시행

□ 시행방안

- (할인대상 및 할인을) 개별 법률*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속하는 가구에 대해 금번 요금 조정시(전기8.1, 가스9.1)부터 신청자에 한해 할인
 -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(제9조제5항)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
 -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별표2 제3호)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
 - ③ 장애인복지법(제49,50조)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
 - ④ 한부모가족지원법(제5조)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, 부자가정, 조손가정
- (할인절차) 할인 대상자가 한전·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요금할인(가스요금은 신청 익월부터 요금할인)
 - * (전기) 인터넷, 전화·팩스 등을 통해 할인신청서를 한전에 제출(문의☎123)
 - (가스) 할인신청서 및 대상자확인서(지자체발급)를 도시가스회사에 제출
- 이후 할인가구 명단을 복지부 DB의 할인대상자와 비교(매월)하여 할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부 적격자 할인 방지(한전)

□ 혜택가구

- 전기의 경우, 46만 가구가 연간 약 33억원, 가스는 30만 가구가 연간 약 100억원(가구당 33,660원) 수혜전망

참고3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

□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표

구 분	기본요금 (원/kWh)	전력량요금(원/kWh)			
		시간대	여름	봄/가을	겨울
저압	2,130	경부하	51.20	52.10	71.70
		중간부하	129.10	62.60	113.80
		최대부하	206.50	67.90	169.50
고압	2,290	경부하	46.60	47.50	62.10
		중간부하	98.40	57.10	89.70
		최대부하	145.40	60.60	123.30

* 공휴일의 최대수요전력(고압만 해당) 및 사용전력량은 경부하 시간대 적용

□ 가솔린차 및 전기차 연료비 비교

○ (비교 조건) 동급 전기차와 가솔린차 운영시 월 유지비 수준

- 운행조건 : 매월 1,200km(40km/일) 운행 전제
- 연료단가 : 휘발유(1,726원/ℓ, 10.74 전국 평균가격), 전기요금(108원/kWh, 계시별단가 가중평균)
- 연비 : 가솔린차 15.1km/ℓ, 전기차 8.1km/kWh

고속전기차 연비 산정		가솔린차 연비 산정	
구 분	결 과	구 분	결 과
배터리용량(A)	16kWh	배기량(-)	1,399cc
연비(B)	130km	연비(A)	15.1km/ℓ
단위당 주행거리(C=B÷A)	8.1km/kWh	월 운행거리(B)	1,200km
월 운행거리(D)	1,200km	월주유량(C=B÷A)	79.5ℓ
월총전량(E=D÷C/80%)	185kWh	휘발유 단가(D)	1,726원/ℓ
월 전기요금(F)	22,670원	월 연료비 (F=C×D)	137,166원
km당 연료구입비(F÷D)	18.89원/km	km당 연료구입비 (F÷B)	114.30원/km

* 전기요금은 부가세(10%), 전력산업기반기금(3.7%) 포함금액(전기차 충전효율은 80%로 가정)

○ (비교 결과) 동급 가솔린차 대비 연료 구입비의 약 17% 수준

- 전기차를 경부하 시간대 충전시 월 전기요금은 18,130(계절별가중평균)으로 휘발유차 연료비 대비 13%수준